

제301회 임시회
2011. 6. 16.

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5월 2일
-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3. 제안이유

-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(안 제4조)
-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제출 절차(안 제5조, 제6조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(안 제10조)
-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위원에 대한 교육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동기 및 필요성

○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미

-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.

○ 추진경과

-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('03.7.행안부)
- 지방재정법 개정('05.8.4.)
 -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근거 조항 마련
-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('05.12.30.)
 - 주민 참여범위 및 절차,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
-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('06.8.17.)
-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통보('10.11.1.)

○ 조례제정 현황

- '04.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(광역 3, 기초 99) ※ 광역자치단체 : 광주, 대전, 경남

○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절차와 방법, 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, 향후 추진일정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예산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

- 위원회의 기능이 예산편성 방향, 실국별 예산요구안,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,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로 되어 있는데,
-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집행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

- 위원 위촉 대상은,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람,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, 분과위원회별 실국장이 추천한 사람, 기타 지방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,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하였는데,
-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등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객관성,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

○ 분과위원회 설치

- 분과위원회를 도의회 위원회 편제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, 의회 상임위 소관기관 조정이나 도 조직개편 등 분과위원회 명칭이나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경우, 민간위원인 위원들의 소속 분과위원회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붙임

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제정 현황

(기준 : '11. 6월 현재)

구분	조례제정 대상			조례제정 현황			비고
	계	광역시	기초	계	광역시	기초	
계	244	16	228	102	3	99	
서울	26	1	25	-	-	-	
부산	17	1	16	2	-	2	
대구	9	1	8	6	-	6	
인천	11	1	10		-	-	
광주	6	1	5	6	1	5	
대전	6	1	5	3	1	2	
울산	6	1	5	2	-	2	
경기	32	1	31	14	-	14	
강원	19	1	18	9	-	9	
충북	13	1	12	9	-	9	
충남	17	1	16	4	-	4	
전북	15	1	14	8	-	8	
전남	23	1	22	22	-	22	
경북	24	1	23	7	-	7	
경남	19	1	18	10	1	9	
제주	1	1	-	-	-	-	